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0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누525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 유한회사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4. 5. 20. 선고 2013구합55604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12. 16.
판 결 선 고	2016. 3. 30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4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,006,000원, 가산세 7,182,850원, 지방교육세 3,058,820원, 농어촌특별세 1,399,380원 합계 37,647,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03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
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. 10. 14.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,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03

재판장 판사 성백현

판사 왕정옥

판사 채동수